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0. 2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내 일부 단체가 이전함에 따라 신설된 시설을 추가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평창군 문화복지센터”의 정의에서 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여 “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 노인복지시설, 관리사무실, 여성회관, 청소년 문화의 집”으로 함

(안 제2조제1호)

나. “복지기획담당”을 “드림스타트 팀장”으로 함.

(안 제17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'22.09.07. ~ '22.09.27 / 20일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2022.8.31. 기획실-12158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2022.8.31. 기획실-12158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(2022.9.26. 가족복지과-37284)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한다)란”을 “한다)란 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”로 한다.

제17조제6항 중 “복지기획담당”을 “드림스타트 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평창군 문화복지센터“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란 노인복지시설, 관리사무실, 여성회관,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<u>복지기획담당을</u> 간사로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한다</u>)란 <u>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</u>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드림스타트 팀장</u>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장 전해순
연락처	(033) 330 - 2094